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정 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 등 수험생 편의 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며, 응시 수수료 근거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변경,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 소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3.12.5.~12.28.)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공인노무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내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험과목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u>그 시험공 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u> 실시된 영어능력검 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 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 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③ (생 략)	제6조(시험과목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u>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 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 월 1일 이후에</u> 실시된 영어능력 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 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 출할 때에는 <u>7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내야 한다.</u>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 출할 때에는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내 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529